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 보장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28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9. 6.
- (3)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휴식을 목적으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로 간주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호 및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u>가.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u> <u>나.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u> <u>다. 가맹점사업자의 휴가 기간</u> <u>라. 가맹점사업자의 휴가, 휴식,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의 사유로 단축된 영업시간 동안 가맹본부의 근로자 파견·대체 영업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신 설></u> 3. ~ 13. (생략) ③ (생략)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u>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u>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u><신 설></u>	<u>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3.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휴식,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의 사유</u>----- ----- ----- ----- ③ <u>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영업시간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u>

□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금지를 규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행위로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일정 기간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도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¹⁾,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영업 강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을 받는 사례도 발생함²⁾.

○ 이에 개정안은 계약서의 의무기재사항에 영업시간, 가맹점사업자의 휴가기간, 가맹점사업자의 휴가 등으로 단축된 영업시간동안 가맹본부의 근로자 파견·대체영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휴식을 위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 행위로 보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1) "문 늦게 열면 벌금" 본사 방침에...점주들 "못 참겠다"(2024. 2. 12. SBS 뉴스)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 2. 21.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에 최초 제재)

○ 다만, 현재 표준계약서 내용에 영업시간이 포함되어 있고³⁾, 영업시간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휴식을 이유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로 간주하기 보다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계약서의 의무기재사항으로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현행법령에서 광고·관측행사의 약정을

3) 편의점업 표준계약서

제26조 (영업)

-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일 이상 월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영업시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 ⑥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명절휴무 6주 전에 POS등을 통해 휴무신청에 대해 공지하고, 휴무를 신청한 가맹점주에게 명절 당일로부터 4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외식업 표준계약서

제32조 (영업)

-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일 이상 월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영업시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시간을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휴식을 사유로 가맹점별 영업시간 단축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가맹사업의 본질인 통일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고, 영업시간 변경은 타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정할 문제로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법상 별도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과 영업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

문 의 처

02)6788-5114
